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입법예고를 공고합니다. 위 개정안에 이의가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19일 까지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참조 : 기술표준원 전기용품안전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관리제도를 위해정도에 따라 강제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으로 차별화 하는「선진형 안전관리제도」로 개선하고, 법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여 현행 전기용품 안전인증대상품목중 위해성이 낮은 품목과 그동안 관리가 미흡했던 신개발제품 등을「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지정하여 제조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신고 한 후 판매하도록 하고, 위해성이 높은 품목은 현행「강제인증대상」으로 유지하되 품목수를 최소화 함(안 제2조 및 제5조의3, 제6조의2 제7조의2 제8조)

나.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경우에도 강제인증대상과 동일한 벌칙 적용을 위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신고하지 않은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16조)

다. 「불법전기용품 대역」의 경우에도 제조·판매

와 동일하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15조)

라. 안전관리대상 이외의 전기용품에 의한 안전사고발생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조·판매중지권고, 공표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마. 전기용품 제조자와 안전관리 관련 기관에 대한 시험장비·연구개발비용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5)

바. 언론·백화점·대형유통업체 등에 불법·불량 전기용품 유통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 담당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전기용품안전팀
연구관 윤기환(☎509-7242~45)
법률 제 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중개정법률안]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라 함은 구조·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등의 위험 및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 중 제품시험만으로도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제4항중 “산업자원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

- ①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스스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당해 전기용품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제품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③제①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 ④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신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신고를 면제하거나 안전기준에 의한 안전성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등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산업표준화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경우
3. 그 밖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자율안전확인인 표시 등) ①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5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율안전확인인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의 면제를 받은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 및 제6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1항중 “電氣用品輸入·販賣業者”을 “전기용품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으로 하고, “販賣하거나 販賣를”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자율안전확인인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사용등의 금지) ①전기용품의 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는 자율안전확

인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6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의 제목중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로 한다.

제8조의제1항중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하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이라한다)이”로 하고,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製造業者 또는 電氣用品輸入·販賣業者에”를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로 한다.

제8조의제1항제1호중 “아니한 때”를 “아니하거나 또는 제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로 한다.

제8조의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조의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등이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때

제8조의제2항중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製造業者 또는 電氣用品輸入·販賣業者가”를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 또는 전기용품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로 하고, “당해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製造業者 또는 電氣用品輸入·販賣業者의”를 “당해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로 한다.

제8조의제3항중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으로,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製造業者 또는 電氣用品輸入·販賣業者에”를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로 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 (안전성조사 등) 산업자원부장관은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등 외의 전기용품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전기용품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1.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고 발생시 신체의 상해 정도가 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우려지역이 광범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전기용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0조의2 규정에 따른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해 전기용품에 대한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전기용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대여업자에 대하여 판매금지·대여금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를 권고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금지·대여금지·개선·수거 또는 파기의 권고만으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대여업자에 대하여 판매금지·대여금지·개선·수거 또는 파기의 권고를 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금지·대여금지·개선·수거 또는 파기의 권고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5(전기용품안전관리에 관한 지원) ①산업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전기용품의 안전 관련

기관에 대하여 전기용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장비·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중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에”를 “제1호 내지 제7호 또는 제9호에”로,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製造業者”를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로,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를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의”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를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이”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제6조의”를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이 제6조의”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제4호를 제6호로, 제5호를 제8호로, 제6호를 제9호로하고, 동항에 제3호 및 제5호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사항
5.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인의 표시 등에 관한 사항

7.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인의 표시 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사용금지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15조제4호중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은 자”를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은 자와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인의 신고를 한자”로 하고, 제5호중 “製造한 者”를 “제조하거나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한 자”로 하고, 동조제8호중 “販賣하거나 販賣를 目的으로 輸入·陳列 또는 보관한 者”를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로 하여 동조를 제9호로 하며, 동조에 제8호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6조의2의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자율안전확인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또는 그 용기와 포장에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10.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 신고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다만 제8조제1항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6조제3호를 제4호로하고, 제4호를 제6호로,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제6호를 제8호로,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조의2의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인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한 자

5. 제7조의2의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인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품을 사용한 자

부 칙

제1조 이 법은 2009.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이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이 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시험을 받은 것으로 본다.